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관광진흥기본계획에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 포함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93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영 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관광진흥기본계획에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 포함	2
※ 참고자료	8
□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중 지속가능한 관광 관련 사항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6. 3. 6.

다. 회 부 일: 2026. 3.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및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 안전·위생·방역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산업은 기후위기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관광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산업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관광진흥기본계획에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 포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① 관광산업의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과 ② 관광시설의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조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관광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
8. 관광시설의 <u>감염병</u>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 <u>감염병</u> 및 기후위기 <u>적응</u> -----

현행	개정안
9. (생략) ③·④ (생략)	-----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현행법¹⁾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5년마다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관광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1)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의2.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의2. 관광산업 인력 양성과 근로실태조사 등 관광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산업은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관광산업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및 기후위기 적응 전략 등을 관광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관광산업의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과 관광시설의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광 정책 전반에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적응이라는 가치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관광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²⁾에 따르면,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하며,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 10. (생략)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1의2. ~ 17. (생략)

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 제3조제2항제1호의²³⁾는 기본계획에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의 ‘탄소 중립 실천’ 및 ‘기후위기 적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 탄소배출 등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1987년 UN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성되었고,

2006년 UNEP(유엔환경계획)와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에서는 관광 분야에도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의 개념을 도입하여,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광객, 관광산업, 환경,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음⁴⁾.

현행법⁵⁾ 및 「관광진흥법」⁶⁾의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4) 김송이·이원희,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방안 및 신규과제 발굴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0)

5) 「관광기본법」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이용, 고용

‘지속가능한 관광’은 에너지·자원의 사용 최소화, 기후변화 대응, 지역 경제와 상생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관광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적응’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환경적·기후적 측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볼 수 있음.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은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저탄소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친환경 여행문화 조성, 지역주민과 상생·공존하는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경영 확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⁷⁾.

둘째, 개정안 제3조제2항제9호는 기본계획에 ‘관광시설의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역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수립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감염병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 ⑩ (생략)

7) [참고자료] 참조

8) 방역: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적인 관광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0년 12월 기본계획에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한 바 있음⁹⁾.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광산업의 기후 위기 적응 전략 및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포함하여 미래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7

9) 관광기본법[법률 제1770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시행 2021. 6. 23.]

※ 참고자료

□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¹⁰⁾ 중 지속가능한 관광 관련 사항

□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

- (저탄소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관광사업체 탄소배출량 조사를 통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중소 사업체의 탄소저감 컨설팅 등 지원

*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원을 찾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조사한 통계

- (친환경 여행문화 조성)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체험단 운영 등 국민 참여 독려 및 탄소중립 실천 여행지, 친환경 생태체험 여행지 등 ‘친환경 추천 여행지’ 선정, 육성

■ 탄소 저감 관련 캠페인 사례



몽골인이 방한 관광상품 구매 시 1명당 1그루의 나무를 몽골에 심는 캠페인
→ 사막화 방지, 지역민 소득, 한국관광 확대로 연결



연예인 활용 플로깅 캠페인

- (지역주민 상생·공존) 지역 관광역량 강화 및 ‘오버투어리즘’ 등 관광으로 인한 지역문제 해결과 조정을 위한 기반 마련

- 지방자치단체, 기업, 주민 등 지역관광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 참여하는 ‘지역관광 혁신조직’ 확대(~’27년 53개)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경영 확산) 마이스, 호텔, 유원시설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ESG 경영 가이드 개발 및 업계 확산 지원

*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투명(Governance) 앞 글자를 딴 용어로, 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핵심요소

10) 관계부처 합동, 2022.12.12.